

# 한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제도 비교연구

-고객보호관련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United States and Korea

이병렬(Byeong-Ryul Lee)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II. 양국 제도의 구축과정과 구조적 특징 | 참고문헌             |
| III. 고객보호에 대한 양국제도의 비교  | Abstract         |

##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d the customers protection regulations in electronic payment system by Article 4A of the UCC and EFTA of 1978 and b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Korea. Both Korea and America have various regulations to protect concerned parties(customers). For examples, the errors of payment order, money-back guarantee, and unauthorized payment order etc.

Firs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risk of loss caused by ambiguous term in payment orders that do not express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senders.

Second, most rights and obligations created by Article 4A of America can be varied with the agreement of affected parties.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The exceptions include the money-back guarantee. So Receiving bank have to pay to originator the ordered money included interest. However, Korea also has money-back guarantee but bank do not pay interest to sender.

Lastly, Electronic Funds Transfer Act of 1978 and Regulation E has US\$ 50 regulation in order to protect customers on the unauthorized payment order. Article 4A imposes duty to detect unauthorized payment orders to originator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ly reasonable security procedure, while Korean law imposes the duty to notify the bank in order to decrease the loss resulted from unauthorized payment order.

Key Words : EFT, errors, money-back guarantee, unauthorized payment order

## I. 서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중이다. 이는 제2차대전이후에 뉴욕이 국제 금융중심지로 등장하면서 금융업무가 폭주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세계 최초로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이미 1970년에 연방준비제도가사회의 전자결제시스템인 FedWire(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Network)를 비롯하여 뉴욕어음교환소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와 자동정산소 기능을 하는 ACH(Automated Clearing House)등을 구축하여 은행의 결제업무에 적용함으로써 결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이와 같은 미국 결제시스템의 변화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현재 전 세계의 금융선진국들은 대부분 전자결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심지어 유럽연합(EU)도 회원국가들간의 상이한 금융시스템 및 경제수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회원국 전체에서 접속이 용이한 통합된 전자결제시스템인 'TARGET2'를 출범시켜 이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현금, 어음, 및 수표 등 장표방식의 지급수단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IT산업 및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자자금이체, ATM,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수표, 인터넷뱅킹 및 전자채권등록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및 방식을 결제업무에 이 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5년말부터는 한국은행의 금융전산망(BOK-Wire)을 통하여 거래 상업적인 자금까지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지금은 일부 상업은행 및 지방은행까지도 자체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거래자금을 결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에서는 은행창구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비율보다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결제업무를 처리하는 비율이 더 높을 정도로 전자결제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과 이용의 증가는 은행을 비롯한 관련당사자들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 법제를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시켰다. 그 이유는 전자결제가 장표방식에 의한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대면성 및 비서면성을 가진 전자적 장치의 이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서면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78년에 소비자간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한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을 입법하여 상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간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한 제정법으로서 1989년 미국통일상법전 제4A(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 UCC 4A)편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에서도 현존하는 상법 등 전통적인 제정법을 가지고는 전자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규율하는데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하다가 2005년 1월에 전자금융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06년 4월 28일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7929호)을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은 소비자 소액금융과

기업간 거래결제를 모두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은 전자결제시스템을 규율하기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게 각기 특색이 있고 체계적인 제정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국은 상호 오랫동안 경제 및 정치적인 동맹국가로서 교역규모를 증대시켜왔으며 최근에는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이라는 현안을 앞두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금결제업무의 증가를 수반하여 양국의 전자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기회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양국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양국의 전자결제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고객보호에 따른 주요 쟁점들만 비교·고찰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양국 제도의 구축과정과 구조적 특징

### 1. 미국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신용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68년에 대부진실법<sup>1)</sup>(Truth in Lending Act; TILA) 및 「규정(Regulation) Z」을 제정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sup>2)</sup> 또한 미국은 한국보다 약 20년 먼저 금융서비스산업의 전자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 의회 산하에 전자자금이체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lectronic Fund Transfer; NCEFT)을 설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도입에 관한 제 문제를 조사·검토한 후 1977년에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의회에 제출하였다.<sup>3)</sup> 이에 따라 미연방의회가 1978년 접근(ATM or POS)터미널 및 배타적인 접근 수단(홈뱅킹과 연결)으로부터 시작된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할 목적으로 연방소비자 신용보호법(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에 제9편을 추가하는 형태로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s Transfers Act of 1978)을 제정하였다.<sup>4)</sup>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이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규정(Regulation) E」을 만들어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을 이행하고 있

1) 15 USC §§1601-1657(2000).

2) 대부진실법은 2000년에 「규정 Z」는 2003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3) NCEFT, "Electronic Fund Transfers in the United States: Policy Recommendations and the Public Interest",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4) Kenneth Kiesnoski, "Regional EFT Networks Join POS Check Approval Initiative", *Bank System & Technology*, 2000, p.3.

다.<sup>5)</sup> 그리고 「규정 E」는 연방준비제도가사회가 정기적인 문답식으로 발행하는 공식주석서(Official Staff Commentary on Regulation E)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과는 별도로 각 주가 제정한 전자자금이체법(state EFT Law)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캔자스주는 1981년, 콜로라도주, 몬타나주, 그리고 미시간주는 1987년, 미네소타주 등은 1988년에 관련 법을 각각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sup>6)</sup>

또한 미국은 1989년 상업적 거액전자자금이체(wholesale credit transfer)만을 규율하기 위한 미국통일상법전 제4A편(이하 제4A편이라 함)을 제정하였다.<sup>7)</sup> 즉 제4A편은 주로 기업간 전자자금이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당사자는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 등이다.<sup>8)</sup> 자금이체의 일부분이라도 소비자 거래로서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면 그 자금이체에 관한 제4A편은 적용되지 않는다.<sup>9)</sup>

그리고 동 법의 적용여부는 고객보호한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National Union Fire Ins. Co. of Pittsburgh, PA v. Bank of America* 사건<sup>10)</sup>에서처럼 법정은 자금이체가 전자터미널, 전화, 컴퓨터 또는 마그네틱 테이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제4A편이 적용되기보다는 「규정 E」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제4A편이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보다 전자자금이체의 당사자간의 책임한계에 대한 조항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반면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은 구체적인 고객보호규정을 가지고 있어 고객의 보호 측면에서는 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과 제4A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전자결제 당사자들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당사자들간의 사적약정에 의하여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sup>11)</sup>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적약정으로는 「규정(Regulation) J」<sup>12)</sup>, 「CHIPS규칙」, 그리고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세계 은행간 금융통신협회) 규칙」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미국의 전자결제제도는 소비자간 소액거래와 기업간 거액자금의 이체를 규율하는 이원적 법 체제 및 다양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은 2000년에, 「규정 E」는 2003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6) 미국에서는 국내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하여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양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FTA §919; 12 CFR §205.12(b); 손진화,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0, p.119을 참조.

7)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이 입법과정에서 미국 전체의 통일성을 달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아리조나, 코네티컷, 캔자스,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등에서는 자신의 주에 적합한 형태로 일부 변형하여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은 각 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다; <http://www.secure.law.cornell/uniform.html>. 10 Jan., 2007.

8) Benjamin Geva, “Recent UCC Article 4A Jurisprudence: Critical Analys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Vol. 36), Fall 2003, p.19.

9) George Brandon and Mary Ann Jenkins, “The Limits of article 4A”,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21, Feb. 2004, pp.99-104.

10) 240 F. Supp. 2d 455, 49 U.C.C. Rep. Serv. 2d 875 (D. Md. 2003).

11) 유선기, “전자자금이동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pp.61-66.

12) Benjamin Geva,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s*, San Francisco, Matthew Bender & Company, Inc., 2003, p.3-61.

## 2. 한국

한국은 전자결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을 기초로 하는 기본법성격의 단일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한국의 제도는 소비자간 소액거래와 기업간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2007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모든 전자금융기관들이 전자적 정치를 이용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한국의 전자결제제도의 구축의 시기는 미국의 1970년대와 비교하면 훨씬 늦다. 한국도 1993년과 1997년 두 차례 미국처럼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첫 번째는 재무부가 1994년 초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의 시안까지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나 금융기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sup>14)</sup> 1997년에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1997년 6월 금융개혁위원회가 전자지급과 결제 등 전자금융의 발전추이를 지켜 본 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는 바람에 역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약 10년 후인 2006년 4월 28일에 와서야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2001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으로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 약관으로서 인터넷뱅킹, 전자화폐, 전자어음, 및 전자수표 등 전혀 새로운 전자금융수단에 의한 당사자들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01년 국회와 정부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해 11월 재정경제부가 주축이 되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정보통신부 및 한국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실무자와 학자들로 구성된 소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위한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공청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작성하여 2002년 10월에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유보하여 제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후 제17대 국회에 와서야 재정경제부는 기존 법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재 입법을 추진하였다. 2005년 1월 11일 동 수정법안은 국회에 제안되어 2005년 1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공청회를 거쳤다.<sup>15)</sup> 2006년 2월 21일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6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6년 4월 28일 법률로 공포되었다. 동법은 전문 5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금융거래자의 권리와 의무관

13) 제4A편에서는 은행의 개념을 연방준비은행, 외국은행, 저축은행, 저축과 대부협회, 신용조합, 신탁회사와 그 밖의 국내 상업은행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다; UCC §§4A-103(a)(1), 105(a)(2) & comment 1. 그러나 한국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제8호, 10호, 제12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그 밖의 법률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시키고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3).

14)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3, pp.6-8.

15)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안에 관한 공청회”, 2005. 6.17.

계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허가, 등록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9783호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두고 있고 이 시행령은 2008년 7월에 대통령령 제20913호로 일부 개정 되었다.

### 3. 양국제도의 특징비교

상기의 제도구축과정을 거쳐 입법된 양국의 전자결제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율대상면에서 미국의 제4A편과는 다르게 지급이체와 추심이체 두 가지 모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급이체와 추심이체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어떤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거래지시에 따라 이동하는 금융거래로서의 거래지시를 지급지시와 추심지시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둘째, 적용구분면에 미국은 서면에 의한 자금이체와 전자자금이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는 반면<sup>16)</sup> 한국은 전자금융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일반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면 모두 포함시키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한정해놓고 있지 않고 있다.<sup>17)</sup> 따라서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전자성만 확보되면 모두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미국의 전자결제법보다는 적용대상이 훨씬 포괄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도 지급거래에만 적용되어 인터넷 증권거래, 전자보험거래 및 전자어음거래의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또는 전혀 관련 사항을 규정해놓지 않고 있다.<sup>18)</sup>

셋째, 미국의 전자결제시스템은 폭주하는 금융권의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이 개발되어 상거래에 적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법적인프라구축이 부재한 상태의 대안으로 출발하였다. 즉 온라인상에서 계약체결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이 존재하고 있고 상품인도는 상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금결제에 적용될 법적 규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포괄적인 수단으로서 입법되었다. 따라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가 비 대면 및 의사소통이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자지급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16) UCC §4A-103(a)(1).

17)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

18) UCC §4A-108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Twenty-Fourth Session Report*,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25th Sess., pp.11-15 & Annex I, U.N. Doc. A/47/17, 1992.



### Ⅲ. 고객보호에 대한 양국제도의 비교

#### 1. 지급지시의 오류

전자결제과정에서 오류(errors)란 관련 당사자가 원래 의도한 내용과 상이하게 전송한 금융거래를 말한다.<sup>19)</sup> 전자금융거래는 당사자의 의도된 과실이 없이 단순히 착오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sup>20)</sup> 오류로 발생한 금융거래의 정정과 책임분담에 대해서는 양국의 제도는 각기 다르게 규정해놓고 있다. 미국은 소액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는 60일 통지규칙을 적용하여 오류의 발견과 정정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았고 거액 상업적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제4A편에서는 오류의 유형과 각 유형에 적합한 당사자들의 책임분담부분에서 비중 있게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에서는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규정해 놓지 않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은 전자결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오류 정정절차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미국처럼 오류의 유형과 발생한 오류의 통지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도 금융기간이 이체서류, 정기계산서의 전송 또는 사전승권서 지급이체에 관한 통지 후 60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오류의 통지를 받은 경우 주장된 오류를 조사하고 오류가 발생하였는지를 여부를 결정하여 그 조사 및 결정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 및 우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1)</sup> 또 이 절차를 준수하는 대신 오류의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무권한 이체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경우 이자의 대기를 포함하여) 주장된 오류의 금액을 소비자의 계정에 임시로 재 이체하고, 그 조사의 종결 및 오류발생 여부의 결정을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는 오류조사의 연장기간 중에 임시로 재 이체된 금액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sup>22)</sup>

또한 미국의 제4A편에서는 지급지시의 오류를 4가지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당사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면서도 오류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sup>23)</sup> 제4A편에서 수신은행이 범하기 쉬운 이행오류 및 그에 따른 책임분담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4)</sup> 우선 고객이 지급지시한 금액보다 많은 다액 및 이중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초과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다.

19) UCC §4A-205.

20) 전자결제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비록 정확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매개체인 기계장치의 별도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무작위적인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21) EFTA §908(a).

22) EFTA §908(b).

23) EFTA §986;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르면 오류는 무권한 및 부정확한 전자자금이체, 정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금이체 결과의 누락, 금융기간의 계산상의 착오, 전자단말기로부터 부정확한 금액의 수취, 필요한 기록의 추가정보 및 명세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기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규칙이 정하는 오류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제4A편에서는 금융기관을 특별히 수신은행(receiving bank)라고 명시하고 여기에는 원지시인의 거래은행(originator's bank)과 수익자의 거래은행(beneficiary's bank)이 포함된다. 또한 최초의 지급지시인을 원지시인(originator)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원지시인이 지급지시한 금액보다 적은 소액이행의 경우에는 수신은행은 수익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지정의 착오의 경우는 원지시인은 지급지시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이미 잘못 지급지시를 이행한 금융기관은 수익자로부터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진다.<sup>25)</sup>

특히 제4A편에서는 오류를 한 당사자에게 오류에 따른 손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고객이 최초 지급지시의 과정에서 오류를 하였다면 지급지시의 오류로 인한 손실은 고객의 책임이지만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하였다면 수신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6)</sup> 또한 전자금융당사자인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오류발견을 위한 그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확립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보안절차에 따라 지급지시의 이행여부에 따라 오류발견을 위한 책임분담이 달라질 수 있다.<sup>27)</sup>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이 약정한 보안절차에 따라 지급지시를 이행한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수신은행은 오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면책된다. 또한 보안절차에 의한 지급지시의 전송이 자동인가 수동인가에 따라서도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제4A편에서는 CHIPS 및 FedWire와 같은 전자자금이체시스템으로 전송한 지급지시가 착오였다면 원지시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sup>28)</sup> 그러나 *Donmar Enterprises v. Southern National Bank* 사건<sup>29)</sup>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급지시가 수동으로 전송되었다면 착오들을 무시한 태만에 따른 책임을 수신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sup>30)</sup>

또한 고객에게 통지의무도 부담시키고 있어 수신은행의 면책범위를 보다 넓혀주고 있다. 만약 원지시인이 수신은행으로부터 전자금융의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후 이의제기를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상당한 기간 내에 양하였다면 수신은행은 고객에게 초과자금을 반환시점부터 착오이행을 인지한 날까지 기간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미국의 제4A편에서는 오류에 대한 책임분담과 수신은행에 대한 면책기준을 자세히 제시하여 수신은행의 면책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 소액거래를 규율하는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는 오류의 정정절차와 소비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의 제도에서는 미국과 달리 오류발견 및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sup>31)</sup>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2)</sup> 또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

25) UCC §4A-303.

26) UCC §4A-205 comment 1.

27) UCC §§4A-207(c)(2) & (d)(2).

28) UCC §4A-202.

29) 828 F. Supp. 1230, 1233-36 (W.D.N.C. 1993).

30) *Continental Airlines v. Boatmen's National Bank* 사건에서와 같이 비록 시작은 착오에 의한 것이지만 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13 F.3d 1254, 1255-57 & n.2 (8th Cir. 1994).

31)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1).

32)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2).



용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의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3)</sup> 따라서 한국의 제도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정하기 위한 시간적 제한기간, 오류의 유형 및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이 오류정정을 위한 기간규정도 없이 다만 오류발생 후 금융기간이 고객에게 통지할 기간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즉 미국의 제도보다 고객보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오히려 고객과 금융기관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자금환급보증의무

자금환급보증(money-back guarantee)이란, 금융기관(수신은행)이 전송자의 지급지시를 승낙한 후 해당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아 자금이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전송자의 계정에서 이미 출금된 자금을 금융기관(수신은행)이 다시 환급해줄 의무를 말한다. 자금환급보증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지급지시금액을 금융기관에게 전송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지급지시상에 명시된 수익자의 계정을 발견할 수 없거나 지급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아 자금이체절차가 중단된 경우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미국은 금융기관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여 고객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sup>34)</sup> 그러므로 미국의 제4A편에서는 전자자금이체에서 수신은행이 수신된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자금이체가 종료될 수 없거나 어떤 특별한 규칙에서도 종료된 거래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원지시인으로 부터 제공받았던 원금과 이자를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5)</sup>

또한 제4A편에 따르면 대부분의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는 약정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예외<sup>36)</sup>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중의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수신은행의 자금환급보증의무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제4A편에서는 수신은행의 자금환급보증의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신은행의 자금환급보증의무의 효력발생은 전자자금이체가 종료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불행히도 미국의 제4A편에서는 전자자금이체의 종료시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기 때문에

33)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3).

34) 강원진·이병렬, “전자자금이체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2.6, pp.32-33.

35) 제4A편에서는 수신은행의 자금환급보증의무에 따라 반환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일부 경우에 있어 이자지급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수신은행이 이행착오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송자가 착오를 발견하기 위한 통상적인 주의를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때에는 전송자가 수신은행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수신은행은 이행상의 착오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이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UCC §§4A-304 & 402.

36) UCC §4A-204(b) ; 제4A편에서 자금환급보증의무. 수익자에 대한 지급은행의 지급의무, 송신은행의 비은행 원지시인에 대한 법률적인 의무와 지급은행의 비은행 수익자에 대한 법률적인 의무 등이다. 여기에는 수신은행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와 일치하지 않게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직접 및 간접비용과 그에 따른 이자손실 등은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Richard F. Dole, op. cit., p.896.

당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당사자들이 종료의 정의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제4A편에서는 흠결보충규칙(gap--filling rule)에 의하여 종료시점을 결정하고 있다.<sup>37)</sup> 이 규칙에 따르면 종료시점을 원지시인이 지정한 수익자를 위하여 지급은행이 전송자의 지시와 일치하는 지시를 승낙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자금결제에서의 지급시점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금환급보증의무는 수신은행간에도 적용된다. 즉 송신은행(원지시인의 거래은행)은 지급은행(수익자의 거래은행)이 자금이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급은행에 대하여 자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자금이체에서 원지시인은 송신은행에 대하여 송신은행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완전한 자금환급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그의 계정에서 자금의 출금을 허용할 수 있다.

자금환급보증의무와 관련되어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은 원지시인이 지정한 중개은행을 통하여 지급지시가 이행된 경우에 발생한다. 즉, 중개은행이 무능과 부도덕으로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은행이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자에게 자금환급보증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sup>38)</sup> 이 점에 대하여 미국의 제도는 무능한 중개은행을 통하여 최초의 지급지시를 발행한 전송자에게 수신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금환급보증권리를 박탈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송자는 수익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함으로써 전송자의 지급지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수익자에게 이체지급을 하였다면 전송자는 수신은행에게 추가로 해당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채무는 완전히 변제되며 전자자금결제체는 법률적으로 종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지시인은 무능한 중개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한국의 제도에서도 전송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송자에 대한 자금환급보증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sup>39)</sup>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지시에 따른 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미 수신한 자금을 전송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기관의 과실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그 전송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제도에서는 환급되는 자금의 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 미국의 제도와 다르다.

### 3. 무권한 거래

무권한 거래(Unauthorized payment order)란 금융거래를 이행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접근매체를 위조, 변조, 본인의 정당한 거래지시를 해킹하여 금액 및 수익자의 변경 및 금융거래처리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결과적으로 무권한 금융거

37) UCC §§4A-402(f) & comment 2.

38) Neil O. Littlefield, "Payment: Articles 3, 4, and 4A", *The Business Lawyer*, Vol. 54, November 1998, p.1543.

39)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래가 이루어진다.

먼저 미국의 소비자간 소액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과 이를 이행하는 「규정 E」<sup>40)</sup>에서 제시하는 무권한 이체에 대한 고객보호규정의 핵심은 미화 50달러 규칙이다.<sup>41)</sup> 동 규정에서 제시하는 고객보호의 기준은 소비자의 책임한계가 미화 50달러 또는 금융기관이 무권한 이체를 고객으로부터 통지받거나 이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무권한 이체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2)</sup> 그러나 동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첫째 접근장치의 분실 및 도난을 인지한 날로부터 제2 영업일까지 금융기관에 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둘째 금융기관의 정기계산서가 송달된 이후 60일 이내에 그 계산서에 나타난 무권한 이체를 고객이 금융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sup>43)</sup> 즉 『규정 E』에서 상기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고객에게 일부 책임을 분담시키는 이유는 무권한 이체로 발생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sup>44)</sup> 따라서 약속된 제한시간까지 그러한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통지기간의 만료 이후 발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sup>45)</sup> 그러나 적절한 시간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외한 무권한 이체를 유발하는 고객의 태만은 고객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객이 통지해야 하는 기간의 한계는 반드시 60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간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연장도 가능하다. 즉 *Regatos v. North Fork Bank* 사건<sup>46)</sup>에서 법정은 고객이 계정에서 출금되어 지급에 대한 실제통지를 수취했을 때 무권한 지급지시의 개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47)</sup> 따라서 고객의 이의제기기간은 일부 경우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객이 통지기간의 지나친 연장을 원한다면 그 이유의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Kruser v. Bank of America NT&SA* 사건<sup>48)</sup>에서도 법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명세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고객이 통지기간의 확장에 대한 정상 참작상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고객의 책임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미국의 제4A편에서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무권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안절차를

40) 12 CFR §205(2003).

41) 이병렬, “신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고객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9, pp.241-247.

42) EFTA § 900(a).

43) 미국에서 신용카드지급을 규율하는 대부진실법과 『규정 Z』에서도 무권한이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은 『규정 E』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책임한계를 미화 50 달러까지로 한정시켜놓은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규정 Z』에서는 접근장치의 도난(카드의 도난 및 분실)에 대하여 신속한 통지실폐에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권한 지급에 대한 고객의 위험노출에 대한 책임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금융기관에 신속히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50달러규칙이 적용된다. 15 USC §1661(i); 12 CFR §226.12(c); Reg. Z §226.121(b)(1).

44) Reg. E§205.2(m).

45) 이 경우에도 고객의 책임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즉 미화 500달러 규칙이 적용된다.

46) 257 F. Supp. 2d 632 (S.D.N.Y. 2003).

47) Reg. E§205.6(4)

48) 281 Cal. Rptr. 463 (Cal. App. 5th Dist. 1991).

확립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만약 보안절차가 상업적인 상당성을 갖추면서 수신은행이 보안절차에 따라 지급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비록 무권한 자의 지급지시라 할지라도 수신은행은 이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9)</sup> 그리고 원지시인은 수신은행으로부터 자금이체결과에 관한 정기명세서를 수취한 이후 무권한 이체사실을 금융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기간을 1년으로 확장하고 있어 원지시인의 통지의무에 대하여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 보다 관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50)</sup> 이는 제 4A편에서는 무권한 이체에 대한 책임분담의 기준으로 원지시인이 수신은행에 대한 통지의무보다는 수신은행의 전송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보다 비중있게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sup>51)</sup>

예를 들면 *Manufacturers Hannover Trust Co. v. Chemical Bank* 사건<sup>52)</sup>에서 법원은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지만 이 지급지시에 대하여 원지시인에게 조회하지 않고 수신은행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수신은행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년 후에 발생한 *Security Pacific. International Bank v. National Bank* 사건<sup>53)</sup>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지급지시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신은행이 원지시인을 포함한 전송자에게 조회 및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수신은행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원지시인이 지급지시의 이행과 관련하여 먼저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에게 이체의 현황과 이행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지시인의 법적 대리인과 상속인에게도 존재한다. 심지어 원지시인과 수익자가 동일한 은행에 계정을 두고 있는 이체의 경우에도 지급지시의 금액이 수익자에게 이체지급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보고를 하여야 한다.<sup>54)</sup>

반면 *Nationwide Merchant Bank v. Star Fire Int'l* 사건<sup>55)</sup>에서처럼 원지시인이 이 기간내에 수권하지도 않고 유효하게 입증하지도 않은 지급지시를 승낙하였다면, 수신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지급지시의 지급금액 및 지급이자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sup>56)</sup> 그러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 수신은행은 고객이 수권부족을 결정할 정례적인 주의를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고객이 은행에 통지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상당한 기간내에 수권이 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은행에 통지하지 못하였다면 항변할 수 있다.<sup>57)</sup> 상당한 시간은 약정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지만 지급을 반환할 수신은행의 의무는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소액 및 상업거래를 규율하는 법에서는

49) UCC §4A-202.

50) UCC §4A-505.

51) 최해범·이병렬, “국제금융거래에서 무권한 행위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pp.100-102.

52) 559 N.Y.S. 2d 704, 708-9(App. Div. 1990), appeal denied, 568 N.Y.S. 2d 15 (1991).

53) 772 F. Supp. 874, 867-7(W.D. Pa. 1991).

54) 이병렬,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62-65.

55) 889 F. Supp. 124 (S.D.N.Y. 1995).

56) UCC §4A-105(a)(3); 4A-204; *Schmidt v. Fleet Bank* 사건에서 법원은 법적으로 무권한 지급지시를 수신한 은행은 예탁자/고객과의 계약을 파기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1998 WL 47827 (S.D.N.Y.); *Fernandes v. First Bank & Trust Co. of Illinois*, 1993 U.S. Dist. LEXIS 12342 (N.D. Ill. Sept. 3, 1993).

57) UCC §4A-506.

고객이 무권한 이체임을 증명해야 하고<sup>58)</sup> 고객측에 무권한 이체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는 이체가 수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한국의 제도에서도 무권한 거래에 대해서 2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9)</sup> 둘째, ‘사고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그리고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0)</sup> 이 규정을 통하여 한국의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금융사업자가 고의 및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과실당사자의 배상책임원칙에 따라 전자금융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이용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약관에 면책규정을 둔 경우에 전자금융사업자는 면책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sup>61)</sup> 마지막으로 당사자 쌍방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일반거래 즉 소비자거래인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부담하고 법인거래인 경우에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주의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sup>62)</sup>

또한 무권한 거래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결과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관련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sup>63)</sup> 즉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58) Reg. E§205.2(m).

59)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1).

60)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2).

61) 중과실과 경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2).

63)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미국이 전자결제제도를 구축하였던 시기는 한국보다 약 30년이 앞선다. 물론 한국도 1993년에 본격적으로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하여 입법을 시도하였지만 여러 국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기되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와서야 비로소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1989년 미국 통일상법전 제4편에 ‘자금이체’ 편을 신설하여 거액 상업적 전자자금이체를 주로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만듦으로서 소비자거래를 규율하는 1978년의 전자자금이체법과 함께 이원적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과 한국 모두 이와 같은 제정법적인 제도구축이 되기까지 전자결제에서 발생된 다양한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는 금융약관에 의지하여 해결해왔다. 하지만 전자결제업무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 당사자들간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서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분쟁을 약관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하였다는 점에서 양국의 제도구축 방향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구축시기의 출발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가 등장하기 이전인 1970년대 이었고 한국은 인터넷이 상거래에 이용되기 시작한 1995년보다 훨씬 늦은 2007년에 와서야 전자결제 제도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양국의 입법동기는 상이하다. 또한 양국은 역사적으로 교역관계 및 경제의 의존도가 밀접하였지만 경제발전단계, 구조,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었음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제정된 양국의 제도들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구축면에서 미국은 소비자간 소액거래와 기업간 거액자금의 이체를 규율하는 이원적 법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일적 법체제로서 소비자간 거래와 기업간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제4A편이 서면에 의한 자금이체와 전자자금이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법은 전자금융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일반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면 모두 포함시키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한정해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법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전자성만 확보되면 모두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미국법보다는 적용대상이 훨씬 포괄적인 반면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는 한국법이 어떤 특정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여신거래, 수신거래, 기타 증권·보험거래, 신탁거래 및 추심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정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도 전자결제업무가 다양화되면 거액이면서 상업적 전자결제와 소액인 소비자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로 이원화 시켜서 고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액거래에서 고객인 소비자와 거액거래에서 고객인 기업은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적 지위 및 거래규모가 다를 수 있어 이를 구분하여 보



호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상거래과정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입법동기에서는 미국은 폭주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이 개발되어 상거래에 적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법적인프라구축이 부재한 상태의 대안으로 출발하였다. 즉 온라인상에서 계약체결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이 존재하고 있고 상품인도는 상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금결제에 적용될 법적 규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포괄적인 수단으로서 입법되었다.

셋째 오류발생과 정부부분에서 미국의 제도에서는 오류의 유형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규정해 놓지 않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오류 정정절차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히 규정해 놓았다. 반면 미국처럼 오류의 유형과 관련된 당사자의 책임분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소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이체서류 및 정기명세서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오류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간제한규정이 없어 당사자간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오류 정정을 위한 통지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넷째 자금환급보증규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제도는 수신은행의 자금환급보증의무를 인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금융기관의 자금환급보증의무를 인정하고 있지만 환급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섯째 미국은 무권한 거래에 대한 책임분담은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되 일부 경우에서 금융기관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즉 무권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범위와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은 미화 50달러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접근장치의 분실 및 도난을 인지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도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무권한 거래에서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에서는 미국처럼 소비자의 책임한계와 구체적인 통지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국의 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강원진·이병렬,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2.6.

김자봉, “최근 전자금융의 발전과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2006

김제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06.8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안에 관한 공청회”, 2005. 6.17.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사무국·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금융정보화추진현황”, 2003-2004, 2005.
- 이병렬, “신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고객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9.
- \_\_\_\_\_,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2
- 소현철, “전자금융거래법시행에 따른 감독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 「신용카드」, 제40호, 여신금융 협회, 2007.
-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 정보통신부, “전자지불산업의 소비자보호연구”, 2004.
- 정찬형,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Vol.51, 2008
- 최해범·이병렬, “국제금융거래에서 무권한 행위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8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 한국금융연구원, 전자금융거래법제정방향, 2003.
- \_\_\_\_\_, 최근 전자금융발전과 주요이슈, 2006.
- 한국법제연구원,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2002.
- 한국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 한정미,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원칙”,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제3호, 2007.
- Alces, Peter A. Payment Systems, West Publishing Co., 1996.
- Brandon George and Jenkins Mary Ann, “The Limits of article 4A”,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21, Feb. 2004.
- Chapman, a., “Payment Briefs”, *AFP Exchange*, Vol.28, No.4, 2008.
- Croal, M & Weikart, E., “On the Elevator: Electronic Funds Transfer”, *Credit Union Management*, Vol.31, No.7, 2008.
- Darmstadter, H., “Wired: Problems with Electronic Funds Transfer Agreement”, *The Banking Law Journal*, Vol.221, No.7, 2007.
- Dole. Richard F, “Receiving Bank Liability for Errors in Wholesale Wire Transfers”, *Tulane Law Review*, Vol. 69, March 1995.
- Geva Benjamin, “Recent UCC Article 4A Jurisprudence: Critical Analys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36, Fall 2003.
- Geva Benjamin,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s*, Mattew Bender & Company, Inc., 2003.
- \_\_\_\_\_, “Recent UCC Article 4A Development, 2003-2005”, *Uniform Commercial Code Law*

- Journal*, Vol. 38, No. 1, 2005.
- Gillette, Clayton P. and Schwartz, Alan, and Scott, Robert E. *Payment Systems and Credit Instruments*, The Foundation Press, Inc., 1996.
- Gerald McLaughlin, “Commercial law: Electronic transactions”, *National Law Journal*, Vol. 22, October 1999.
- Krinick, Evan H, “UCC Article 4A holds the answers to disputes that may arise when there is an error in an electronic funds transfer”,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6, June 1999.
- Littlefield Neil O., “Payments: Articles 3, 4, and 4A”, *The Business Lawyer*, Vol. 54, November 1998.
- Mahony, Donal O' and Peirce, Michael, and Tewari, Hitesh, *Electronic Payment System*, Artech House Boston, London, 1997.
- Mann, Ronald J., *Payment Systems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a Division of Aspen publishers, Inc., 1999.
- Meadows Robyn L and Bjerre Carl 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survey: Introduction”, *The Business Lawyer*, Vol. 54, August 1999.
- NCEFT, “Electronic Fund Transfers in the United States: Policy Recommendations and the Public Interest”,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 Patrikis Ernest T., Baxter Thomas C., & Bhala Raj K., *Wire Transfer*, Bankers Publishing Company, 1994.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Twenty-Fourth Session Report*,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25th Sess., & Annex I, U.N. Doc. A/47/17, 1992.
-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 & 「규정 E」.
-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2007-2008).
- <http://www.federalreserve.gov>.
- <http://www.law.cornell.edu/UCC/4A/overview.html>.
- <http://www.law.upenn.edu/ulc/UCC2b.html>.
- <http://proquest.umi.com/pqdlink>.